

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14.4.8

제안자 : 김도경 위원외

■ 수정이유

- 계획안이 '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'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 체결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, 중국의 정식 국명이 '중화인민공화국'임을 감안하여 안건의 제목을 수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■ 수정 주요내용

- 안건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충청북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호북성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

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

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건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충청북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호북성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